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25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5 부

판 결

사 건 2015구합787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주식회사 A

[redacted]

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9. 2. 28.

판 결 선 고 2019. 3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4. 8. 19. 원고에 대하여 한, 취득세 207,485,930원, 지방교육세 18,964,070원, 농어촌특별세 9,482,03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25

이 유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. 12. 4.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은 피고가 2019. 1. 16.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,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양준

판사 박종환

판사 추진석